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4

한국 민간공익재단의 발전방향

[연구 1]

한국 민간공익재단의 발전방향

박태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 2]

공익재단 주식출연의 세법상 쟁점 및 그 개선방안연구

이상신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차 례

[연구 1]

한국 민간공익재단의 발전방향

박태규(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Ⅰ. 서론
Ⅱ. 한국 민간공익재단의 현실
Ⅲ. 미국 공익재단의 역할과 위상
Ⅳ. 결론

[연구 2]

공익재단 주식출연의 세법상 쟁점 및 그 개선방안연구

이상신(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Ⅰ. 서론
Ⅱ. 공익법인 주식출연 등에 대한 규제
Ⅲ. 공익법인 주식출연에 대한 다른 나라의 과세제도
Ⅳ. 구원장학재단의 사례
Ⅴ. 대안(사례회피)적 세무계획 분석
Ⅵ. 현행 제도의 평가
Ⅶ. 개선방안

[토론문]

연구 1.

한국 민간공익재단의 발전방향

박태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요약]

한국 민간공익재단의 발전방향

1. 한국 민간공익재단의 역사와 현황

- 1939년 최초의 민간공익재단인 '양영회'설립. 2000년대 이후 46%이상이 설립됨. 초기 학술•복지영역 집중.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문화 등으로 범위 확대됨
-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사회적 시각: 사회명분에 기여(긍정적) vs 조세감면(부정적)
- 1970~90년대 민간공익재단에 대해 경영권승계의 편법수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굳어짐. 이에 따라 정부의 공익재단 규제 강화 : 자산관리강화, 임직원자격규정 강화, 공익활동강화 및 수익사업 감시감독
- 공익재단의 주식보유에 대한 규제 : 공익활동 출연자산 상속세 면제(1952)->공익재단 출연자산 공익지출규정(1974)->주식 20%까지만 상증세 면제(1990)->5%로 낮춤(1993)
- 공익재단 출연재산 운영 관리제도 : 기간 내 공익목적사업 사용관리, 주식 보유 및 취득관리, 수혜자 범위 관리, 자기내부거래 관리, 특수관계자 관여제한, 주무관청, 세무당국 보고의무, 회계감사 및 공시의무 등 15가지
-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익재단의 공익성, 투명성의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대해서 규제위주의 제도가 이어짐. 그러나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음.

2. 미국 공익재단의 역할과 위상

- 미국의 민간공익재단은 2012년 현재 86,192개, 전체 자산 715조원, 연지출 57조원으로 미국 전체 민간기부금의 16% 차지
- 1930-40년대 세금회피 목적이라는 부정적 평가와 논란. 1969년 세제개혁법령으로 면세자격을 인정하되 엄격한 모니터링 받도록 변경. 자산의 5%이상 지출의무.
- 세계적 공익재단 사례 : 록펠러재단, 카네기재단, 럿셀 세이지재단, 포드재단

3. 결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민간공익재단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 필요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에 대한 검토 필요. 특히 주식출연관련 정책 개선 필요함.

Ⅰ. 서론

전 세계 기부문화 역사에서 록펠러 재단이나 카네기재단, 최근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같은 민간 공익재단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지난 십 오년 간 민간기부의 규모가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서도 부유층의 사회환원과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간공익재단은 대규모의 자산출연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상 기업가나 기업에 의한 경우가 많다. 현재 자산규모 순위 40위 이내에 드는 공익재단 대부분이 기업가, 혹은 기업의 이름을 딴 재단으로 민간 공익활동에 큰 기여를 해내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익재단의 역할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와 정부의 각 부처의 연구 등에서 법제도 환경 개선에 대한 제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당 부처와 입법기관에서 기부문화 관련 법제도가 우선순위의 이슈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자와 전문가 사이의 논의에 그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공익재단의 역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공익재단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오랜 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의 공익재단의 역할과 사회적 기대, 실제 성과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에서 공익재단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국 민간공익재단의 현실

1. 한국 민간공익재단의 역사와 현황

우리 사회에서 최초의 민간의 공익재단은 1939년 기업인 김연수에 의해 설립된 “양영회”였다. 양영회는 설립 75주년을 맞이하는 공익재단으로 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학술연구가 필요한 학자나 연구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해방이전에 설립된 장학법인은 4개에 불과한데 설립된 순서대로 보면 양영재단(1939년 6월), 경방육영회(1939년 9월), 은성장학회(1940년 5월), 영신아카데미(1941년 1월)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공익재단은 초기에는 장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우리 사회에 민간이 재산을 출연해서 설립한 공익재단은 영역별로 장학을 목적으로 한 재단이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사회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민간이 설립의 주체가 된 공익재단은 해방이후 주로 설립되었는데 특히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공익재단이 설립되어 전체 46%가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78% 이상이 1990년대 이후 그리고 전체 민간공익재단의 92%가 넘는 재단이 1980년대 이후 설립되었다. 시기적으로 198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 공익재단의 설립이 집중되었던 것은 이 시기는 오랫동안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공익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충분히 보유한 많은 성공적인 기업인들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설립연도 및 사업유형별 재단법인 수(설립주체가 '민간'인 경우)

(단위 : 개)

		설립연도						전체
		1960년 이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공익사업유형	학술장학	8	12	44	144	264	315	787
	문화	0	4	2	5	27	41	79
	교육	0	1	1	0	9	4	15
	사회복지	1	2	2	11	32	107	155
	의료	1	0	2	5	4	5	17
	기타	0	1	2	3	34	77	117
전체		10	20	53	168	370	549	1170

자료: 아름다운재단

민간공익재단 사업의 영역을 보면 전체의 76% 이상의 재단들이 학술·장학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된 현상으로 공익재단들이 해방 이후 어려운 경제적 여건 하에서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한 곳은 인재육성이라고 해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설립된 재단들 중에서 비교적 장학·학술 사업의 비율이 하락해 민간공익재단들의 사업영역이 학술·장학 영역을 넘어 사회복지, 문화, 그리고 다른 영역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민간공익재단들 사업영역의 상대적 변화는 국민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가 변하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사회복지 분야의 공익재단의 설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1990년 후반 경제위기를 경험한 이후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민간의 공익재단의 설립이 집중되었던 것은 시기적으로 1960, 1970, 그리고 1980년대의 경제적 고속성장의 시기를 경험한 이후 많은 부를 축적했던 민간(기업, 개인, 또는 기업+개인)의 주체들이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고속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려는 명분에 기인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많은 부를 축적한 기업인들이 축적된 부(또는 기업)를 후세대에게 물려주는 시기와도 맞물리고 있다.[1] 즉, 자식들에게 부 또는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상속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익재단을 통한 세금감면의 혜택도 중요한 공익재단설립의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기업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민간공익재단의 경우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설립한 공익재단의 경우에도 기업인으로서의 사회적인 평판과 더불어 설립자가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려는 동기에서 설립한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시대별 민간의 공익재단 설립의 개별적 동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민간공익재단의 설립동기를 정리할 수 있다.

민간이 공익재단을 설립하려는 동기는 대체로 4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1)사회적 명분을 위해 투자하려는 동기를 들 수 있다. 우리사회는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가정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나 명분에 헌신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된다. (2)그렇지만 민간이 공익재단에 재산을 출연하고 설립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공익재단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부여되는 조세감면의 혜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 16조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이나” 동법 48조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각각 상속세과세가액이나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증여세 등을 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공익재단을 설립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3)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평판과 명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동기가 될

1) 동아일보, “명문조항 없는 공익법인 증여재산 유용(流用)할 땐 증여세 추징”, 1974. 9.17.자, 경향신문, “8개 재벌의 누탈(漏脫)사건에 비친 양상 : 속 검은 상속, 탈세도 다양”, 1974. 10. 29.자

수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동기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정치적 명성이나 사회적 명망을 쌓아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하려는 욕구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통해 신뢰의 유산을 축적하고 지역사회에서 명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재단설립이 활성화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 또 다른 동기로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동기에서 자신들이 축적한 재산을 출연해서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개인들이 경험한 매우 다양한 과거의 경험, 예를 들어 가족전통의 가르침, 개인의 어려웠던 경험 등에서 공익재단 설립의 동기를 찾을 수 있다.

2.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법제도 변화

이런 여러 공익재단의 설립의 동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19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공익재단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위의 공익재단의 설립동기 중에서 '사회발전이라는 사회적 명분,' '사회발전을 통한 사회적 평판의 확보' 등과 같이 사회발전이라는 공익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동기와 '조세감면'과 같이 이기적인 동기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공익재단을 뜻이 있는 재산가들이 자신들이 보는 시각에서 사회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익활동을 수행함으로서 사회적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런 견해는 공익재단의 사회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익재단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은 매우 부정적으로 공익재단을 조세감면의 혜택만을 겨냥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공익재단에 대한 이런 두 가지 견해는 미국의 공익재단이 성공한 기업인들에 의해 설립되었던 시기인 20세기 초 미국사회에서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공익재단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우리 사회의 공익재단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시각은 1970년 이후 비판

적인 시각이 보다 우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비판적 시각은 1970년 대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공익재단의 설립을 통해 증여세를 피하면서 경영권을 후손에게 이전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공익재단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용되는 부분이 강조되면서 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 **8개 재벌의 '누탈사건'에 비친 양상 속 검은 '상속'탈세도 다양** 경향신문. 1974.10.29.
>
> **8개재벌의 '누탈 사건'에 비친 양상. 속검은 '상속' '탈세'도 다양.**
> **공익법인 등 내세워 '변칙' 너무 지능적이라 끝매듭도 의문**
> 국세청이 지난 71년 이후 그 총수가 사망한 8개 재벌 그룹에 대해 실시한 상속세누탈 특별조사에서 거액의 탈세근거를 잡아내고 있다.
> 상속세 추징에 상액이 70억원정도의 거액이라는데에 충격도 크지만 탈세수법도 여러가지라는 것이다....(중략).....지난 8월부터 전담반을 투입, 특별조사를 벌였던 것.
> 조사결과 나타난 이들 대기업의 상속세 탈세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지능적이어서 세무전문가들도 그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 상속재단은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세율은 높은 누진율로 되어있는게 특징이다. 예컨대 1천만원이상 40%, 1억원이상 60%, 5억원이상엔 70%가 부과되며 여기에 부가세 10%가 별도가산 된다.
> 상속세의 세율이 이처럼 높기 때문에 탈세수법도 그만큼 교묘해 졌다고 볼 수 있다.
> 국세청 조사에서 밝혀진 수법을 보면 *① 문화육영등 공익법인을 설립, 재산을 우선 상속세대상에서 이탈시킨 후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산과 자금을 변칙 운영하는 방법* ②친척,사원 또는 가공인물에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는 한편 빈번히 이동시킴으로써 국세청의 추적조사를 방해 ③가공명의로 신탁을 하거나, 주식투자에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특전을 악용, 타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④사망1년이내의 증여행위는 상속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리 재산을 분산시키는 등 갖가지 방안이 동원되고 있다.
> 국세청이 적발한 8개 재벌의 상속세 누탈세금추징요인은.....(중략)
> 재벌기업의 상속세탈세방법은 아주 정교해서 국세청도 완전히 적발했다고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상속세 누탈방법을 현행법으로 다룰수가 없는 점을 감안, 정부는 세법개정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 등의 사후관리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송경섭 기자][2)]

2) 기업탈세와 공익재단관련 기사
동아일보, "일부 문화재단 실태 알면 사회 동요", 1975. 12. 10.자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공익적 활동에는 관심이 별로 없거나 또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공익재단에 조세감면의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만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사회에 비춰지게 되었다. 이런 언론의 비판적 시각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에 걸쳐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주식이동 「부세습」봉쇄. 동아일보, 1991.11.08. 기사

주식이동 「부세습」봉쇄. 국세청불공정합병등 변칙거래 조사 강화
공익법인 「재벌 재산은닉」감시. 대형 유흥업소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은 최근의 정주영 현대 그룹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기로 기업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대폭 강화, 자본거래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치소비풍조를 조장하는 대형유흥업소에 대해 늑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3천7백54개에 이르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9일 오전 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주재, 기업들의 최근 부동산을 통한 탈세는 공시지가 적용과 등기의무강화 등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보다는 주식 등 금융자산을 이용한 부의 세습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하고 기업에 귀속되어야 할 자본이득을 세금 없이 기업주나 가족들에게 분배하는 변칙적인 주식이동을 철저히 추적, 과세하라고 지시했다.(중략)
서청장은 또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출연재산이 출연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출연재산의 운용소득중 60%이상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했는지 등을 철저히 파악, 재벌기업들이 출연한 각종 재단이 재벌부의 은닉처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겨레, "재벌 공익법인 사익추구 수단", 1994. 6. 30.자
재벌 공익법인 사익추구 수단
비과세 유무상증자 참여위해 초과보유 계열사 주식 대량처분

동아일보 "재벌의 탈세재산유출구 봉쇄 : 국회에 제출된 공익법인 설립 법안", 1975. 12. 10.자 1면

경향신문, "공익법인 규제의 강화", 1975. 12. 10.자

계열사와 주식 맞바꿔 그룹차원 지분유지 통로로 활용되기도
안재승 기자

공익을 위해 세워졌는가 아니면 절세와 계열사 지배를 목적으로 설립됐는가.
지난해 말 개정된 상속세법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뒤 재벌그룹에 속한 이른바 공익법인들이 보유계열사 주식을 앞다퉈 대량으로 처분하고 있는 것은 재벌그룹들이 공익법인을 만들 때 후자에 더 비중을 두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상속세법을 개정하면서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과세 배제 범위를 종전 총발행주식의 20%이하에서 5%이하로 크게 제한했다. 즉 그전까지는 재벌그룹이 공익법인에 특정 기업의 총발행주식의 20%까지는 상속.증여세를 물지 않고 출연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5%만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2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모두 5개의 재벌그룹 공익재단이 4백35만5천60주에 이르는 주식을 처분했다. 삼성그룹의 삼성문화재단이 지난 2월 제일모직 주식 12만6천여주를 주식시장에서 매각해 지분율을 5.94%에서 4.57%로 낮췄고, 대우그룹의 대우재단도 같은 달 (주)대우 주식 2백70만주를 팔아 지분율이 8.50%에서 5.81%로 낮아졌다...(중략)
개정 상속세법은 경과규정을 두어 법 개정 이전에 이미 5%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도 법 개정 전부터 5%를 넘는 지분을 갖고 있던 이들 공익법인이 주식 처분에 나서고 있는 것은 5% 이하로 낮추지 않고는 해당 기업의 유무상 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돼 그룹 전체차원에서 해당 기업의 지분유지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유무상 증자는 지분율 자체는 높이지 않지만 신규 주식 취득인 까닭에 개정 상속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익법인들은 일단 지분율을 비과세 범위인 5% 이하로 낮춘 뒤 유무상 증자에 참여해 그룹 차원의 지분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연강재단과 양영회가 초과분을 처분한 방법은 재벌그룹의 이러한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연강재단은 두산건설과 두산유리 주식을 동양맥주와 두산유리 등 다른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맥주 및 두산기계 주식과 장외거래로 맞바꿔치면서 초과분을 해소했다.
또 양영회는 전북투자금융 주식을 일단 삼양사에 장외거래로 넘긴 뒤 삼양사는 다이이 주식을 김상응 삼양사 회장과 그의 친척 7명에게 넘겼다.
이렇게 공익법인이 절세와 그룹계열사 지배를 위해 이용되면서 '공익'이라는 수식어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법을 개정했으나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며 "아무리 제도를 정비해도 전담부서를 두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재벌들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혀를 내둘렀다.[3)]

3) 세금회피 우려와 공익법인 관리 강화관련 기사
경향신문, "공익법인 세무관리 강화", 1988. 11. 2.자
동아일보, "공익법인 세무관리 대폭 강화", 1989. 3. 28.자

이처럼 공익재단에 대한 많은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집중되면서 공익재단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만일 공익재단들의 사회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이 두드러졌다면 사회가 공익재단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공익재단에 대한 이런 비판적 시각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70년대 이후에도 많은 공익재단들이 설립되었지만 두드러진 공익활동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등 공익재단의 사회적 기여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조세회피 수단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사회적으로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은 일반 시민들이 공익재단의 사회적 역할을 비판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런 사회적 비판으로 인해 정부의 공익재단에 대한 정책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4] 가장 대표적으로 공익재단을 규제하기 위해 1975년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76년부터 시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3 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졌다. 첫째, 공익재단에 출연한 자산의 불실여부를 점검하고 출연된 자산의 관리강화, 둘째, 공익재단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임직원의 자격규정을 강화, 셋째,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활동의 강화와 수익사업의 감시감독 등이다. 이런 법적인 강화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수단의 경우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을 이용한 경영권행사 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공익재단에 대한 이런 부정적 사례를 중

경향신문, “재벌 문화재단은 재산도피 창구인가”, 1991. 8. 18.자

동아일보, “기업 변칙 문화재단 추궁”, 1991. 10. 4.자 1면

경향신문, “재벌 공익법인 세무 강화”, 1991. 12. 25.자

동아일보, “공익재단 재산 도피처 의혹 많다”, 1993. 3. 25.자

경향신문, “속출하는 공직자 재단 설립.성금 기탁: 사회환원이냐 은닉.축소냐”, 1993. 8. 31.자

동아일보, “공익법인, 출연 혜택 축소 : 부(富) 변칙 상속-증여 막겠다”, 1993. 6. 19. 자

4) 동아일보 “재벌의 탈세재산유출구 봉쇄 : 국회에 제출된 공익법인 설립 법안”, 1975. 12. 10.자 1면

심으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공익재단은 경영권승계의 편법수단으로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이런 시기 언론에서는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는 등 공익재단의 주식보유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뤄졌다. 1952년 공익활동을 위해 출연한 재산에 대해 구상속세법에서 상속세를 면제하는 조치가 취해진(상속세법)이후 1974년 처음으로 공익재단에 출연한 재산을 공익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주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공익재단에 출연한 동일법인 발행 주식의 20% 이상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지 않는 강화된 조세정책이 이뤄졌으며, 다시 1993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재단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면제의 주식보유 비율을 다시 5%로 낮추었으나 기존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1996년(상속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는 보다 1993년 세법개정이전 이미 보유한 5%이상의 주식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동안 처분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공익재단의 주식보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1990년대 들어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단지 성실공익법인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3. 공익재단의 투명성, 책임성을 위한 제도의 도입의 과정

위에서 설명한대로 공익재단을 상속 및 증여의 편법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보유의 비율을 강화하는 시키는 조치를 강화한 다음 공익재단이 출연한 재단을 공정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재산의 운영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강화된 제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1996년 공익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출연자 또는 가족이 사용 또는 수익

을 받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함으로서 공익법인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익재단의 세무관련사항을 확인하고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이 출연목적의 사용여부, 자기내부거래 위반여부, 동일종목주식의 5% 초과 보유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검사를 받도록 강화했으며,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후 1999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공익활동사업에 지출되는 운영소득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공익활동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공익재단들의 회계의 투명성, 자산운용의 공정성 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후속적인 조치들이 뒤를 이어 나오게 되었다. 2002년에는 공익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출연자 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이사회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공익재단의 운영이 재산출연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강화했다. 2004년에는 공익재단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공익재단이 출연재산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공익재단이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등을 매년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하고 공익재단이 보고하는 결산보고서를 과세당국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공익재단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대해 공시제도를 도입해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을 의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산총액이 100억 이상인 대규모의 공익재단의 경우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 매년 감사를 받도록 하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공익재단에 출연된 재산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연한 재산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

후적 관리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공익재단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에는 (1)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하거나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 (2)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대해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운용소득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3)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4) 주식의 보유 및 취득에 대한 사후관리, (5) 공익재단의 공익사업이 일부 특정한 대상에게만 혜택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한 경우의 사후관리, (6)공익재단의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후관리, (7)공익재단에 대한 재산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자 등의 이사취임 및 임직원의 제한, (8)공익재단 재산출연자와의 특수관계법인을 위한 광고 및 홍보 행위시 가산세 부과제도, (9) 출연한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10)주무관청과 세무당국의 각종 정보의 통보의무, (11) 공익재단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제도, (12)외부 회계감사 의무제도, (13)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의무제도, (14)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제도, (15)사업연도별 공익사업 운용명세 등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제도 등의 제도가 있다.

위의 공익재단에 대한 출연재산의 운용의 공익성, 투명성, 출연자와 관련된 특수관계자 등의 의사결정의 제한, 회계감사 및 결산의 공시 등 매우 다양한 제도가 도입됨으로서 이제 공익재단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사후적인 관리 및 감시제도가 도입되는 등 공익재단에 대한 사회적 모니터링 시스템이 상당한 수준 갖춰졌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이후 공익재단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은 1970년대 이후 공익재단을 조세회피의 편법적 상속수단으로 이용한 데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런 사회의 비판적 시각이 40여년이 지난 오늘 공익재단이 사회발전을 위해 기여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공익재단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익재단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대해서는 규제위주의 제도가

지속되고 있다.

4. 공익재단의 사회적 역할 및 사례

위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1970년대 공익재단이라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 생소했던 시기 일부에서 공익재단의 사회적 명분에 근거해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편법상속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공익재단에 대한 사회적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특히 1990년대 정치적인 민주화의 추세에 힘입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공익재단의 주식보유를 제한하는 세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런 제도의 도입은 과거와는 달리 기업들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재산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이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공익재단에 대한 제도는 재산보유를 제약하는 제도와 더불어 공익재단의 사업의 공익성과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된 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이뤄지게 되었다. 오늘의 공익재단들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재단들 설립한 이후 이런 주식보유 등 재산보유와 운영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활발하게 공익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공익재단의 설립을 계획하는 기업인들의 설립을 망설이는 결과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재정의 역할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사회경제적 여건 하에서 민간의 공익적 활동의 일환으로 민간공익재단의 사회적 역할은 매우 필요하다. 아직 우리 사회는 민간이 설립한 공익재단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수동적 공익활동 뿐 아니라 공익재단이기 할 수 있는 사회적 발전을 선도하는 능동적인 역할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다. 만일 현행의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공익재단의 편법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민간공익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정책이 공익재단 사업의 공익성과 투명성에 대한 제도는 유지하는 한편 보다 공익재단의 사회발전에 적극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자산보유 규제와 관련된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

Ⅲ. 미국 공익재단의 역할과 위상

민간이 설립한 공익재단이 사회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는 국내의 경우보다는 미국의 사례에서 잘 찾아 볼 수 있다. 20세기 초반에 설립된 민간공익재단들 중 대표적인 사례인 '카네기재단', '록펠러재단', '세이지재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익재단들이 미국사회발전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으며 여전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재단들 역시 설립시 미국사회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다. 특히 미국의 공익재단의 설립은 19세기말 20세기 초 산업계에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산업자본가들이 미국 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산업화과정에서 당면하게 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서 그 출발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1. 미국 공익재단의 현황

미국의 민간공익재단(Private Foundation)은 2012년을 기준으로 86,192개가 7,150억 달러(약 715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되며 한 해 공익지출이 570억 달러(약 57조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공익영역으로 유입된 전체 기부금의 16%를 차지한다.[5] 전체 기부금에서 재단지출의 비중

은 1970년대 6%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6]

미국의 재단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사업기관, 연구자, 사회개혁운동가, 정부 사이에 연계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면서, 이를 토대로 국가적 정책을 수립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재단은 민간의 부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만들어진 기구 또는 기관으로 정의되며, 해당 기금은 정부나 민간인 개인으로서는 지원하기 곤란한 분야, 일정한 위험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분야, 따라서 상당한 통찰력을 필요로 하며 이런 분야에 최적의 투자를 해야만 하는 '자선적 목적을 갖는 모험적 자본'(venture capital of philanthropy)이라 할 수 있다(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1968). 또 다른 정의에 따르면, 재단은 자체 기금과 자체 이사진 및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갖는 비정부 및 비영리기관인 동시에, 교육적, 사회적, 자선적, 종교적 분야 등 공공복지를 위한 비영리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해 가는 기관이다(Fishman, James J. & Schwarz, Stephen, 1995).[7]

미국에서도 재단의 설립과 세제혜택에 대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세금 인센티브[8]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 재단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끼치는 했지만(294개의 재단이 1930년과 1939년 사이에, 239개의 재단이 1929년 전에 설립됨), 세금회피를 위한 기부, 즉 기부의 동기를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특히 1940년대 이후 재단의 숫자와 자산에 극적인 증가가 있게 되는데(1940년 이전에 1,940개이었던 것이 1940년과 59년 사이에 5,400개로 증가) 이는 1936년 연방 상속세의 인상이 많은 영

5) "Key Factors on U.S. Foundations-2014edition" Foundation Center
6) Giving USA 2013-The Annual Report on Philanthropy for the Year 2012

7) 이형진, "'필란트로피'(philanthropy)란 무엇인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 2014
8) 미국 세법은 세액 공제와 관련 몇 차례에 개정을 거치는데 1913년의 수정헌법 제16조와 Revenue Act는 소득세(income tax)의 신설을, 1917년에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그리고 1919년에는 부동산 기부에 대한 공제가 입법된다.

향을 끼쳤다.[9]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며 1969년에 세제개혁법령(Tax Reform Act 1969)이 시행되게 된다. 개인이나 기업이 설립한 민간공익재단을 세금코드 501(c)3에 속하는 면세 기관으로 분류하면서도, 일반 대중이 기부하는 지역재단과 자선단체와 비교할 때, 세제혜택 정도를 줄이면서 더 많은 모니터링을 받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기금자산의 5%이상을 반드시 지출하도록 의무를 갖고 있다. 즉, 미국은 민간 재단의 공익성에 대한 기대와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합리적 법안으로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재단의 사례는 한국에서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제도적 환경 변화를 논함에 있어 어떤 사회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 미국 공익민간재단 주요사례

2-1.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

1913년 공익재단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인류와 미국의 국민들이 당면한 질병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록펠러재단은 설립의 목표를 “전세계 인류의 복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했다. 1913년에는 의학교육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질병을 인류의 삶에 있어 가장 중대한 문제로 보고 의료와 보건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신생아 보건과 성교육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위해 공중위생국에 20년간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록펠러재단은 보건교육에 대한 지원을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중국에 현대의학 교육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전 세계의 보건.의료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과 연구지원사업을 수행했다. 록펠러재단은 주요한 공익사업으로 보건, 의학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질병에 대한 연구, 백신 개

9) 이형진, 2014 같은 책

발연구 등 보건과 의료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지원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록펠러재단은 공익재단으로 사업의 대상을 미국의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지원사업의 지역으로 삼았다는 특징을 재단의 설립초기부터 보여 왔으며, 지원의 대상을 개인보다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기관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록펠러 재단은 1943년 멕시코정부의 요청으로 멕시코에서 식량증산을 위한 녹색혁명(멕시코 농업사업)을 진행해서 녹색혁명을 성공시키고 콜럼비아, 칠레 등에서도 녹색혁명을 성공시킴으로써 남미지역의 식량부족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2-2. 카네기재단(Carnegie Foundation)

1905년 설립된 카네기재단(Carnegie Foundation)은 교육의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설립되었고 이런 설립의 목적에 따른 재단의 사업은 오랜 동안 지속되었다. 카네기재단은 초, 중등, 고등교육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의 교육 발전에 대한 연구와 집필을 지원하는데 재단사업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카네기재단은 교육과 관련한 연구지원에서 의학교육 등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교원연금제도, 교육평가제도, 고등교육기관의 분류 등 교육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전반에 대한 연구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카네기재단의 활동의 결과 미국에서 저소득층, 중산층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포함해 고등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가져왔다.

카네기재단은 1950년대와 1960년에 고등교육에 대한 중요한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결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카네기재단의 목표와 주요사업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교육의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표에 입각한 목표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교육의 발전을 통한 사회발전이라는 재단의 목표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네기재단은 지역사회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출발해서 1917년 도서관건물 신축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도서관모

델을 개발하고 도서관교육을 지원하고 도서관협회 설립을 지원하는 등 도서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런 카네기재단의 지역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오늘날 미국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정부의 공공도서관 정책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2-3. 럿셀 세이지재단(Russell Sage Foundation)

럿셀 세이지재단(Russell Sage Foundation)은 1907년에 미국내의 사회적,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저소득층과 노년층 문제를 다루는 사업목적을 선구적으로 다루게 되었고 이후 병원과 교도소의 환경개선, 직업으로서의 사회복지를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사회적 움직임을 지원한 것이 러셀 세이지 재단이었다.

럿셀 세이지 재단이 설립된 이후 처음 지원한 사업은 대도시 근로계층의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에 대해 매우 심도 있고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한 피츠버그 조사(Pittsburgh Survey)였다. 피츠버그 조사는 빈곤의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보다는 빈곤의 원인과 치유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빈곤층을 수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는 다른 근원을 찾는 것이다. 이후 사회적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려는 사회적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세이지재단에 지원을 신청하게 되는 등 세이지재단이 사회조사방법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세이지재단은 미국사회에서 사회정책을 시행함에 앞서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회조사방법론을 주도하는 매우 혁신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재단 지원의 역량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사회정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회과학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재단의 중요한 사업정신으로 삼고 있다.

2-4. 포드재단(Ford Foundation)

포드재단(Ford Foundation)은 1936년 포드자동차의 2세인 엣셀 포드(Edsel Ford)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었다. 포드재단은 설립시 “공공의 복리를 위한 과학 교육, 자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립이후 포드재단은 여러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활동을 수행했지만 재단의 본격적인 공익활동 수행은 1950년에 이르러서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헨리 포드(Henry Ford)와 엣셀 포드의 사건 후 그들이 보유한 포드자동차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 주식을 재단에 기증함으로써 포드재단은 자산규모가 가장 큰 공익재단이 되었으며 헨리 포드 2세에 의해 재단이 미래의 청사진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게 되었다. 그 결과 포드재단은 세계평화, 세계의 법과 질서유지에의 기여, 변화하는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원칙에 대한 충실성 유지,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복리의 증진과 민주주의적 목적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한 경제제도의 개선, 교육시설의 개선과 교육의 기회균등의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포드재단은 20세기 초에 설립된 다른 공익재단들과는 달리 설립자에 의한 재단의 공익활동의 철학과 방향이 설정되고 이뤄지지 않고 설립자의 사후 후계자에 의해 재단의 공익활동의 방향이 설정되고 공익재단으로서의 발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이런 이유로 포드재단은 설립 후 한때 재단의 설립이 상속세의 감면을 위한 것으로 비판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으나 1950년 이후 포드재단의 활발한 공익활동은 미국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의 활동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Ⅳ. 결론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공익재단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인해 공익재단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에는 민간공익재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이 도입되면서 많은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정부에게만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민간공익재단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형태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시기이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많은 사회적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민간공익재단들이 미국사회 뿐 아니라 미국을 벗어나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커다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민간의 공익재단들은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사회적 제도이다. 이런 민간공익재단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공익재단들이 사회문제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자산의 유형 중에서 국내법인 발행 주식의 출연을 제약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런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민간공익재단들이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에 많은 지장을 받을 뿐 아니라 주식출연을 통한 민간공익재단의 설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민간공익재단에 출연되는 주식출연에 대한 정책의 개선안이 가장 시급하다. 따라서 민간공익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주식출연과 관련된 정책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박태규, 황창순, “공익재단의 역할과 발전방향,” 양영재단연구보고서, 2008.
손유진, “한국의 재단”,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포럼 발표자료, 2012.
이상민, 이상신,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2.
이형진, “‘필란트로피’(philanthropy)란 무엇인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 2014, 2014.

Joel Fleishman, "The foundation: How private wealth is changing world," Public Affairs, 2008.
“Key Factors on U.S. Foundations-2014edition” Foundation Center
Giving USA 2013-The Annual Report on Philanthropy for the Year 2012

연구 2.

공익재단 주식출연의 세법상 쟁점 및 그 개선방안 연구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요약]

공익재단 주식출연의 세법상 쟁점 및 그 개선방안 연구

Ⅰ. 현행 주식출연과 보유 규제 법안의 평가

1. 공익법인 측면
- 공익재원확보의 측면에서 주식출연규모가 커지는 것이 바람직
- 기업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보유주식 매각 시, 출연자 의사 반영여부 합의필요
2. 주식기부자 측면
- 상속세 50% 환경에서 상속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자 있음
-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공헌하면서 경영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필요로함
- 재단 출연 주식은 출연자인 기업가 우호지분으로 인식되는 경향 있음
3. 정부 측면
- 재벌들이 세금 비용없이 지분율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 20%->5% 규제 후 완화하려는 시도 있었음

Ⅱ. 다른 나라의 과세제도

1. 일본
- 주식보유가능 비율 50%, 취득에 대한 제한 없음
- 그 이상비율의 경우 무의결권주나 신탁설정으로 가능
- 공익 목적 사업 비율이 50% 이상 의무

2. 미국
- 주식보유가능 비율 20%, 기업이 3자에게 운영될 경우 35%

Ⅲ. 구원장학재단의 사례

1. 수원교차로 주식의 90%기부하여 구원장학재단 설립. 2010년까지 87억원의 장학사업 실시
2. 설립 6년 후 140억원의 증여세 부과
3. 감사원 심사청구 기각, 증여세 부과취소 소송진행. 1심 승소, 2심 패소, 현재 대

법원 계류 중

Ⅳ. 현행 제도의 평가

1. 완화 내지 폐지 주장 : 공익활동을 위한 주식출연 위축을 개선해야 함
2. 강화 주장 : 현재 공익재단 보유 주식의 배당수익률 낮아 재원조달 역할 못하며, 지주회사화 사례 많음

개선방안

1. 기본방향의 수정 : 주식출연 자체 제한 -> 공익법인의 영리법인 지배 방지
2. 중소기업에 완화된 주식출연기준 적용 : 가업승계의 필요성을 인정받음
3. 주식 신탁에 대한 적용 배제 :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 제한으로 지주회사의 기능 방지
4. 초과출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 과도한 의결권 제한은 기부감소의 위험성
5. 의결권 제한 주식의 구체화 :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 명기
6. 증여세 면제 비율의 완화 : 20%선 제안
7. 초과 출연된 주식에 대한 배당 강제 : 재원조달기능 강조. 5% 의무지출 조항 가능.

Ⅰ. 서론

민간 공익재단 92%가 1980년대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전체의 76%는 장학사업을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설립된 공익재단은 사회복지.문화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공익재단법인의 설립 동기는 사회적 명분.조세 혜택.개인적 경험 등이 있으나 조세 감면의 혜택만을 겨냥하는 설립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점, 그래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행해졌다는 점 등이 지난 우리 민간 공익재단 역사의 한 단면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들은 공익재단 사업의 공익성.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활발한 공익활동을 막거나 기업가들의 재단 설립을 막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의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이름 난 록펠러재단, 카네기재단, 럿셀 세이지재단, 포드재단의 경우에도 설립 시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받았으나, 미국사회발전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공익재단의 법적 규제에 의미 있는 시사를 한다고 생각한다.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특히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을 통한 회사 지배'라는 관점에서 세법상 원칙적으로 5%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는 구원장학재단 사례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구원장학재단 사례를 통하여 주식출연 관련 우리의 공익법인 지원세제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익법인 주식출연과 관련된 현행 세법 규정을 소개하고, 구원장학재단과 관련된 세법상의 쟁점을 살펴 본 후 미국 재단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공익법인 주식출연 등에 대한 규제

1. 제한입법의 연혁과 취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내국법인 주식의 5% 이상 취득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공익법인에 부과한다. 이 규정은 상속세법이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될 때 도입된 것인데, 그 전까지는 제한 규정이 없었다.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경영권의 우회지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된다. 주요 내용 및 변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10)]

<표 1> 공익법인 주식출연 규제의 변천 과정

시기	내용
’90. 12. 31 이전	주식에 대한 규제 없음
’91. 1. 1～’93. 12. 31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20%→ ’90. 12. 31 이전에 20%를 초과하여 출연 또는 취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안함
’94. 1. 1 이후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11)] → ’93. 12. 31 이전에 5%를 초과하여 출연하거나 취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안함
’08. 1. 1 이후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 다만, 2007.12.31. 법률 개정을 통해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5% 초과취득 제한규정을 10%로 완화(2008.1.1. 이후 주식 출연분부터 적용)
’11.1.1 이후	성실공익법인 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더라도 3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면 그 초과부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주식 취득 및 보유 제한을 완화

10) 이상신.박훈,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 시리즈 1), 아름다운 북, 2009.2, p94-95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1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相續稅法改正法律案(政府) 檢討報告", 1996.11, p20에서는 이 개정에 반대견해를 밝힌 바 있다. 즉, “改正案은 公益法人의 보유주식 분산을 통해 公益法人이 出捐者의 持株會社로 간접지배 ·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로 보여지나, 改正案에서와 같이 株式保有總數의 5%이내로 제한하는 개정방향 보다는 기업가가 公益法人을 통해 富의 社會還元을 하도록 유도하고 相續稅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相續稅의 富의 社會還元 기능에도

2. 현행법상 주식출연 규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의 규제는 크게 출연에 대한 제한, 보유에 대한 제한, 목적적 사용에 대한 제한(사후관리) 등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주식출연에 대한 세법상 처리

1) 원칙적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즉 증여세의 과세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현행법상 상속세나 증여세를 벗어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보다 넓으며,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지정기부금과 달리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한도 없이 전액을 과세가액에서 뺀다.[12] 그런데 주식기부는 언제나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증여세에 관한 제48조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한다.[13]

2) 예외적인 과세가액 산입 요건(제48조 1항 단서)

①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주식이 아닌 외국주식이라면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②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a)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예컨대 A가 공익법인인 甲에 C회사의 주식을 출연하고 있는 경우 甲이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同改正內容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봄"이라고 하였다.
12)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3, p1067.
13) 박훈.채현석, 「상속.증여세 실무 해설」, 삼일회계법인.삼일인포마인, 2014, pp1080-1083 등 참조.

이미 보유하고 있는 C회사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즉 A와 甲의 C회사 주식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b)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예컨대 A 및 배우자 B가 甲과 다른 공익법인 乙에 출연한 C회사의 주식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③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출연받는 것은 제한이 없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경영권의 지배 등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④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5% 범위 내에서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고,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10%의 범위 내에서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⑤동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5% 제한에서 제외한다.

제16조 제2항 단서는 5%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48조 제1항 단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는데 그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출연받는 공익법인의 범위

ⓐ성실공익법인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과 그들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과 그들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의 사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이다.

b) 출연주식의 요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의 주주가 아니거나 영향력이 없다면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통하여 계열회사를 간접지배 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c) 출연 목적의 적정성 인정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동법시행령 제37조 제5항). 주무부장관은 그 법인의 설립, 정관변경, 기본재산 처분 등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므로 그 출연 목적이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d) 초과출연 부분의 과세가액 불산입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5% 또는 10%룰 초과하여 출연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e)성실공익법인에 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때 공익법인 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 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도 성실공익법인에 포함한다. 그러나 주식 등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⑥과세가액 산입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즉 초과하는 주식 수에 1주당 가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2) 보유에 대한 제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말 현재를 기준으로 그 주식가액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등에 대해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동법 제48조 9항). 다만 성실공익법인 등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

립한 공익법인 등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보유비율을 50%까지 허용한다.

(3)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추징)

1) 출연 받는 법인 관련

①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일반적인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5% 초과하는 주식 등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5%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등에도 초과 보유 주식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그 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초과보유 주식의 가액을 산입하는 것인데, 그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등이 이에 속한다(동법시행령 제40조 2항).

2)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등의 경우

①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②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소득의 70% 미만을 사용하는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③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였지만 일부의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되었거나(제2항 6호),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④출연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서 법정의 취득제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일정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를 추징한다.

3. 현행 제도의 평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과 보유 등을 규제하는 현재의 제도는 출연받는 공익법인, 출연하는 기부자, 그리고 정부의 3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1)공익법인

①재단의 발전측면에서 보면 출연받는 주식이 많을수록 재산규모가 커지므로 긍정적이다. 따라서 취득 제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②다만 출연받은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식출연 회사의 경영권 방어 등에 문제 있을 수 있다. 2006년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을 국가에 헌납한 후[14] 공익법인이 그 출연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 출연 받은 공익법인이 그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주식의 출연자인 기업 또는 기업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처분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된다.

(2)주식기부자

①주식보유 금액이 높으면 상속세 50%이므로 상속 승계에 어려움이 있다.

②주식회사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율 확보 필요성 및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면서도 사회공헌에 대한 욕구도 동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14) 조선일보 "[사설] 이건희 회장 일가의 8000억원 헌납을 보며" (2006.2.7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一家일가가 8000억원의 재산을 사회에 내놓기로 했다. 이 회장 일가와 삼성 계열사들이 2002년 설립한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 기금 4500억원에다 지난해 사망한 이 회장 막내딸의 재산 등 자녀들의 추가 출연금 3500억원을 합친 돈이다. 이 회장과 삼성그룹은 이 돈이 어떻게 쓰이든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用處용처와 사용방법에 대해선 정부가 시민단체와 논의해 결정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한다.

③기업재단에 출연된 주식의 경우 오너나 오너의 상속자에게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15] 이와 같은 주식기부가 활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정부

①재벌들이 세금 비용 없이 지분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②최초에 20%로 제한되었다가 김대중 정권때 반재벌정책의 일환으로 5%로 묶였으며, 노무현 정권 때 국제 M&A 위기 등으로[16] 제한 완화하려고 하는 등으로 변동이 있었다.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다양한 시각과 필요성은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입법 및 운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음을 보여준다.

---

15) 비즈니스워치, "최태원 SK 회장 기부주식, 한 주 만에 현금된 사연"(2014.8.21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내 사회공헌재단 등에 기부한 SK C&C 주식 일부가 불과 일주일만에 주식시장에서 팔려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기부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둥 최 회장의 순수성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각종 '뒷말'이 나오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인 SK행복나눔재단과 한국고등교육재단은 각각 보유하고 있던 SK C&C 지분 2만3096주(0.05%)와 9829주(0.02%) 전량을 최근 장내매도했다. 각각 18일과 20일에 주식을 팔아 47억원과 21억원으로 현금화했다. 이들 재단이 매각한 SK C&C 주식은 최 회장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난 13일에 기부한 것이다....(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9037).

16) 동아일보, "SK㈜ '적대적 M&A' 무산 이후 파장과 외국사례"(2003.4.14자). 《SK글로벌 사태로 최태원(崔泰源) 회장이 자신의 계열사 지분을 채권단에 모두 담보로 내놓으며 시작됐던 SK㈜의 경영권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외국 동일인 지분이 10%를 넘으면서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이 풀려 경영권 방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논의와 함께 재계와 정부,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경영권 방어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관계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경영권이냐, 투자수익이냐=적대적 M&A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이달 4일 영국계로만 알려진 크레스트 시큐러티스가 SK㈜의 지분 8.64%를 사들여 최대주주로 떠오르면서부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0182773).

Ⅲ. 공익법인 주식출연에 대한 다른 나라의 과세제도

1. 일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받은 주식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상속세법 등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17] 다만 최근 공익법인제도 개혁에 따라 그 관련법이 시행되는 2008.12.1.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근거 등에 차이가 있으나 주식출연에 대한 기본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2008.1.1. 전의 과세제도

일본 총무성의 공익법인 지도감독기준[18]은 다음과 같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를 제한하고 있었다.[19]

> 6. 주식의 보유 등
> (1) 운영재산의 관리운용은 해당 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필요한 자산(현금, 건물 등)을 제외하고, 원본을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한편 가능한 한 높은 운용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
> (2)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기업의 주식 보유 등을 할 수 없다.
> ① 상기 1의 재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경우. 다만, 공개시장을 통하는 등 포트폴리오 운용인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재단법인에 있어서 기본재산으로서 기부된 경우
> (3) 2에 의해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영리기업의 전체 주식의 2분의1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17) 독일의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기부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공익적목적활동을 하는 법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독일의 주식기부와 우리나라의 주식기부의 차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공익재단 기부 막는 '후진세법'”, 2009.1.1자 참조.
18) 公益法人の設立許可及び指導監督基準
19) 이상신.박훈, 전게 보고서, p95-96.

(4) 2의 이유에 의하여 주식보유 등을 행하는 경우(전체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해당 영리기업의 개요를 기재한다.

상기의 지도감독기준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운용재산의 관리운용(공개시장을 통한 포트폴리오 운용(리스크를 분산한 투자수단)인 것이 분명한 경우) 또는 재단법인에 대한 기본재산으로 기부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 (유한회사의 지분을 포함한다.) 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주식 이외의 성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9년 9월말까지 처분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식의 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이 영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그 보유비율은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2007년도 현재 일본의 공익법인 가운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단지 10%에 그친 반면 보유하지 않고 있는 법인이 90%가 된다. 즉 전체 공익법인 24,648법인 가운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법인이 22,866 법인으로 전체의 9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1,782개 법인 가운데, 포트폴리오 운용을 실시하고 있는 법인이 456개, 기본 재산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단법인이 877개, 법률에 의하여 지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수가 7개, 그 외의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664개가 있다[20]. 일본의 예에서 보듯 주식보유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취득 자체에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2008.12.1. 공익법인 제도 개혁 이후

일본의 공익법인 제도 개혁의 중요 특징은 설립허가제도의 폐지, 법인의 설립과 공익성 판단의 분리로 요약할 수 있다. 즉 ①종래의 주무 관청에 의한 설립 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준칙주의에 의해 등기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일반 사단·일반 재단법인), ②일반 사단법인·일반 재단법인 중에서, 공익 목적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민간전문가에 의한 공익인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도록 하여(공기업 연합법인·공익 재단법인), 법인의 설립과 공익성의 판단을 분리시켰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20) 日本 総務省, 『平成２０年度 公益法人に関する年次報告』, 2008, p44.

위에 따라 제정된 공익인정법[21] 제5조는 공익인정의 기준을 열거하고 있는데, 동조 제15호는 “다른 단체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주식 그 외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해당 재산의 보유에 의해서 다른 단체의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정령 제7조에서는 “주주총회 또는 그 외 단체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갖지 않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즉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것은 종래의 관리감독기준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공익 법인은, 매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공익 목적 사업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공익목적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15조).

다만 주식회사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무의결권주로 하거나 또는 의결권을 포함해 수탁자에게 신탁 하는 것으로써 본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22]

2. 미국

미국의 경우 1969년 연방세법 개정[23]으로 민간재단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미연방세법 4943(c)(2)(A)조).[24] 과세상 혜택을 받고 있는 민간재단에 의해 기업이 지배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기업과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것이 그 이유의 하나이다. 민간재단에 허용되는 주식의 보유한도는 민간재단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과 부적격자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하여 20%인데, 예

21) 정식 명칭은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22) 공익인정 등 가이드라인 p24.
항목14(www.kagoshima.med.or.jp/hojin/guideline.pdf).
23) 그 당시 세법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H.R. REP. 91-413, H.R. Rep. No. 413, 91ST Cong., 1ST Sess. 1969, 1969 참조. westlaw(유료사이트)에 의해 해당 원문확인 가능하다.
24) IRC § 4943. Taxes on excess business holdings
(2) Permitted holdings in a corporation.--
A) In general.--The permitted holdings of any private foundation in an incorporated business enterprise are--
(i) 20 percent of the voting stock, reduced by
ii) the percentage of the voting stock owned by all disqualified persons.

외적으로 특정기업이 제3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지배되고 있는 경우에는 35%까지 허용될 수 있다(미연방세법 4943(c)(2)(B)조). 의결권 있는 주식의 2% 또는 총발행가액의 2% 이내에서는 어떤 기업의 주식도 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다(미연방세법 4943(c)(2)(C)조).

이러한 보유한도를 넘어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유주식가치의 10%가 과세되며(미연방세법 4943(a)(1)조),[25] 이후에도 초과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20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미연방세법 4943(b)).[26] 또한 기부자조언기금(DAF)을 private Foundation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한다((미연방세법 4943(e)(1)조).[27]

3. 시사점

공익법인 등에 대해 지주회사 등의 우려 때문에 주식출연시 제한을 두는 것은 지금까지의 현행법의 변화, 미국.일본의 입법례를 볼 때 지나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28] 주식출연을 통한 취득을 낮은 비율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법 때문에 기부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지주회사화의 우려라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취득을 인정하되 그러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29]하거나 신

25) IRC § 4943. Taxes on excess business holdings
(a) Initial tax.--
(1) Imposition.--There is hereby imposed on the excess business holdings of any private foundation in a business enterprise during any taxable year which ends during the taxable period a tax equal to 10 percent of the value of such holdings.
(이하 생략)

26) (b) Additional tax
In any case in which an initial tax is imposed under subsection (a) with respect to the holdings of a private foundation in any business enterprise, if, at the close of the taxable period with respect to such holdings, the foundation still has excess business holdings in such enterprise, there is hereby imposed a tax equal to 200 percent of such excess business holdings.

27) (e) Application of tax to donor advised funds
(1) In general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donor advised fund (as defined in section 4966 (d)(2)) shall be treated as a private foundation.

28) 5%의 제한규정이 선의의 기업가가 공익법인에 더 많은 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옥무석·이기욱, “학교법인의 과세문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4회 하계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 2008.7, p88.

탁 등의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 법체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Ⅳ. 구원장학재단의 사례

1. 사실관계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이며,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30]

일자	사실관계
2002.7.15.	A와 아주대학교 간 주식기증서 작성(수원교차로 주식의 90% 기부)
2002.7.16.	대학이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재단을 설립하여 주식을 인수하되 그 전까지 A에게 운영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건 작성
2002.10.17.	구원장학재단 설립
2003.3.20.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구원장학재단에 출연한다는 기부승낙서 작성
2008.9.3.	수원세무서장이 5% 초과주식에 대하여 140억 4,193만원의 증여세 부과
2009.9.17.	감사원 심사청구 기각
2010.7.	2010년 7월 현재 1천456명의 대학생에게 22억6천200여만 원의 장학금과 대학발전기금 16억 등 87억 1천800여만 원의 장학사업 실시
2010.7.15.	수원지방법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제1심 : 원고 승소)
2011.8.19.	서울고등법원 원고청구 기각(제2심 : 국가 승소)
현재	대법원 계류 중

29) 의결권 포기시 과세혜택을 유지하나 의결권을 포기한 경우 현행과 같이 증여세 과세하는 방안을 주장한 견해로는, 손원익, "비영리법인 관련세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12, p127 참조.

30) 김종근.전병욱,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관련 증여세 과세문제"(구원장학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012.9, 제29권 제3호, p119.의 표 및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news/4167954),파이낸셜뉴스(http://www.fnnews.com/news/201108191159515998) 등 각종 신문기사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2. 원고의 주장[31)]

첫째,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을 과세하는 취지는 재벌기업이 별도로 설립한 공익법인을 통해 모기업의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A씨에게는 이러한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둘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유일한 공익사업의 재원인 180억 상당의 출연주식 중 78%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몰수적인 과세처분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상식한 위헌적 처분이므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해야 한다.

3. 과세관청의 입장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라도 현금이 아닌 주식일 경우 무상증여에 해당되고, 구원장학재단은 출연자인 A씨와의 관계에서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주주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자진신고하지 않은데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140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제1심 법원의 입장

A씨의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 등의 의도가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하며, 공익법인(구원장학재단)이 국가를 대신해 공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법공동체 구성원들의 재정적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므로 조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31) ibid pp119-120 중 관련 부분만 인용함.

5. 제2심 법원의 입장

첫째 구원장학재단은 주주가 재산을 출연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정한 한계를 입법취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재설정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범주를 벗어나 법적 안정성과 입법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
둘째 A씨가 재단의 이사장을 연임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승계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설령 구원장학재단이 경영권 편법 승계와 무관하고, 판결로 인해 재단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과세는 정당하다.

6. 평가

위의 판결이 법 감정 측면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법 이론적으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논문[32]도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전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보면 A씨는 고액의 주식을 출연하면서도 출연 단계에서 세금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쉬운 점이 있다.
한편 2010.12.27. 상증세법 개정을 하면서 이 사례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일정한 성실공익법인 등은 주식을 출연받은 후 3년 이내에 초과보유주식을 처분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한 것이다(동법 제16조 제2항 단서,[33]

32) 김종근·전병욱, 전게 논문, p125.
33)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

제48조 제1항 괄호). 물론 3년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 개정 규정은 구원장학재단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Ⅴ. 대안(사례회피)적 세무계획 분석

A씨가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장학사업을 했다고 가정하고, 취할 수 있었던 방법을 현행 법 체계에서 검토해보는 내용이다.[34] 다른 공익법인을 이용하거나, 주식을 환가하여 처분하는 등의 방법을 취한 경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1. 이미 설립된 다른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A씨가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B 장학재단에 C회사주식을 출연한 경우라면, 증여세는 부과될까? A씨와 출연받은 B 장학재단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A씨의 C회사 주식기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B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이고 A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안을 현실적으로 채택되기 쉽지 않다. 거액의 재산을 출연하면서도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사실상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2. 최대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후 주식출연

A씨가 주식출연 전에 C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최대주주가 아

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김종근.전병욱, 전게 논문, pp125-129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수정.정리 한 것임

닌 상태에서 그 주식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더라도, A와 C회사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주식출연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최대주주의 지위=경영권'이 되므로 경영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 C가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안정적 배당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실상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3.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출연

A씨가 전체 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출연할 수 있다면, 회사지배와 무관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과소한 지분(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폐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하로만 발행을 허용한다(제344조의3).[35]
따라서 A씨는 25% 범위 내에서만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출연이 가능하고 나머지 65%는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출연해야 하므로, 구원장학재단의 사례처럼 과세될 수 있어서 완전한 대안은 되지 못한다.

4. 주식환가 후의 재산출연

A씨가 5%만 주식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85%는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현금 기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

---

35)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며,[36] 결정적인 문제는 비상장주식의 매각이 쉽지 않으며, 85%의 지분 처분과 같은 대량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어서 사례와 같이 170억[37] 원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역시 대안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5. 착오에 의한 재산출연 취소 주장

출연재산의 65%를 초과하는 140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A씨가 증여할 당시에 알지 못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그 기부약정은 착오에 의해 취소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증여 및 증여해제와 관련한 중요한 규정이 있다. 증여 후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당사자가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원래의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증여세는 과세, 반환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지난 후에는 원래의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세법의 태도이다(상증세법 제31조).[38] 이 규정을 고려하면 착오에 의한 취소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사례의 경우 A씨의 주식출연 및 과세처분과의 사이에 5년이라는 시차가 있고, 일단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36) 양도소득세의 크기는 양도차익과 세율 그리고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당시의 세법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그 이하인 경우에는 10%의 할증평가를 하였으며, 중소기업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의 10%이었다. 김종근.전병욱, p127에 의하면 약 22억원 정도로 계산되었는데, 증여세액에 비하면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37) 90%가 180억 원이므로 85%는 170억 원에 해당된다고 가정하였음.

38)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소하고 그로인해 과세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기 어렵다.

6. 시사점

A씨와 같이 의결권 있는 주식 90%를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식출연 기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주식출연 및 보유 등에 대한 현행 세법 규정을, 공익법인, 기부자, 정부의 세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Ⅵ. 현행 제도의 평가

현행 주식출연 과세제도에 대하여는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지만,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 완화 내지 폐지 견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는 공익활동을 위한 기업들의 주식출연을 위축시키므로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대개 주식취득 보유비율을 높이거나 폐지하되 초과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주식취득 사전신고제나 투기적 행위에 대한 가산세 적용,[39] 공익법인 특수관계자의 임원선임 제한[40]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39) 김진수,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재정포럼 14권 8호, 한국조세연구원, 2009, p63 등

40) 김을순.노직수,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제11권, 대한교육경영학회, 2002, p122.

2. 강화를 주장하는 견해

31개 기업집단이 출연한 48개의 공익법인을 분석한 결과 보유주식 중 계열사 주식의 비율이 93.6%에 이르고 무배당주식 비율이 34.9%, 배당수익율이 1.1%에 불과하여 공익법인 출연 주식들이 재원조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이사장의 91.7%가 총수 일가의 영향력에 있는 등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돕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이다.[41)]

3. 소결론

완화를 주장하는 견해도, 강화를 주장하는 견해도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와 합리성이 있으므로 이를 옳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견해들은 기부하는 기업주 측면 또는 이를 제한하는 정부측면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친 감이 있다. 주식을 출연 받는 공익재단의 입장도 고려하고, 기부하는 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1) 이승희, “재벌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주식 보유현황 및 지배구조”, 경제개혁리포트, 경제개혁연구소, 2010-8호, p39.

Ⅶ. 개선방안

재단, 기부자, 정부의 입장을 다 고려하고 기부하는 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주식출연 제한의 기본방향의 수정

먼저 주식출연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기본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규정은 조세회피라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출연자의 주식출연을 제한하는 쪽에 치우친 감이 있는데, 주식출연 자체에 대한 제한보다는 공익법인의 영리법인 지배를 방지하는 관점으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여 주식출연을 하더라도, 2대까지는 공익재단 출연 주식이 우호지분의 성격이 강하지만 3대가 넘어가면 그 영향력이 옅어지게 되므로,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 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카네기, 록펠러 재단도 재산 출연 시에는 상속증여세 회피라는 말이 있었으며, 록펠러는 청문회에 출석한 사실도 있었다.[42] 결국 주식출연에 대한 입장 차이는, '록펠러재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태도에 그 해답이 있다.

42) 록펠러는 석유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막대한 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재단설립이었다. 재단설립을 통해 상속세를 면제받았으며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상당액을 그 재단에 기부함으로써 기부금공제를 받는 방법을 통해, 재단의 자산을 증가시키되, 그 재단의 운영을 사실상 록펠러 일족이 지배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었다. 이러한 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세금회피'라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록펠러는 신탁행위에 의해 재단설립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설립에 대해 의회의 설립허가를 받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록펠러재단은 1913년 뉴욕주의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2. 중소기업과 대기업 주식출연의 분리

현행 규정은 대규모 기업집단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도입취지도 재벌 기업들의 변칙적 상속을 규제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와 무관한 중소기업들의 주식출연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즉 제한비율을 완화 내지 폐지하고 공익법인의 활동에 대한 감독 등 사후관리를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43)]

또한 주식 방어관련 이슈에 있어서도 대기업은 전문가를 활용하여 장기간 준비를 하지만 중견, 중소기업은 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기업보다 중견, 중소기업에서 더 문제가 크다. 특히 주식보유분이 크고, 월급도 작게 받아온 창업주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액보다 상속세 납부시의 평가액이 낮아지는 경우도 많고 또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량처분을 하는 경우 가격도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자녀들은 주식을 상속받을 세금이 없어서 빚만 물려주는 상황도 발생하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자칫 기업의 소멸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 이를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44)] 및 조세특례제한법[45)]상의 지원도 있으나,[46)] 중소기업의 주식출연은 가업승계와 실질적으

43) 김종근.전병욱, 전게 논문, p132.

4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4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로 차이가 없으면서도 그 재산이 공적(公的)인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이므로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주식 신탁에 대한 적용 배제

일본의 경우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주식보유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우리도 5%를 초과한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보유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탁을 한 경우라면 공익법인의 설립과 목적 등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이고, 단순한 신탁의 경우에는 그 의결권의 행사 방법 등에 대한 제한, 예컨대 의결권신탁에 대한 자격 제한과 권리행사 방법 제한 등을 통하여,[47] 법문에서 정하는 지주회사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좀 더 고려할 사항이 있다.

4. 초과출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46) 2014년 개정안에 의하면,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500억 원에서 30년 이상 명문장수기업의 경우 1,000억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증여 특례한도가 일반기업은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명문장수기업은 200억 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조세일보, “2015년, 가업승계 날개를 달다”, 2014. 11. 18.자).

47) 주주가 자기가 가진 주식을 수탁자에게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신탁하고 수탁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의결권을 대신행사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신탁의 대상은 의결권이며,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는 신탁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제도는 다수의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통일시킴으로써 회사의 지배를 가능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는 의결권신탁이 가능하다[네이버 지식백과] 의결권신탁 [voting trust] (매일경제, 매경닷컴).

현재의 주식출연 과세제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대부분의 견해들이 주장하는 방안이다. 주식 출연 자체는 허용하되, 초과출연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정지시키거나 특정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소수지분에 의한 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이 무의결권 또는 의결권 제한 주식을 25%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장학재단 같은 사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결정적으로 기부자의 기부동기를 고려할 때 과도한 의결권 제한은 기부 자체를 줄일 위험성이 크다.

대규모 기업의 상장주식 25% 이상을 기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본다면 초과주식 출연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대규모 기업의 주식출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출연재산의 크기가 클수록 주식 수도 많을 것이므로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의결권 제한은 기부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에 대해 주식 출연에 대한 상한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초과출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5. 의결권 제한 주식의 구체화

상법 제344조의3은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있는 의결권 제한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이사선임이나 감사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회사 지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할 때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세법에서 규정하자는 것이다. 즉 세법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다 구체화.세분화하여, 예컨대 이사나 감사 선임에 있어서 공익법인이 가진 주식 중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정하는 것이다.[48)]

48) 상법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6. 증여세 면제 비율의 완화

세법은 5%(성실공익법인은 10%)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완화하는 것이다. 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발행주식의 20%, 일본은 50%, 영국, 호주, 대만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면제 비율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가 변칙상속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가족으로의 경영권 승계 경향이 강할수록 이러한 문제가 부각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은 가족이 승계하지 않고 전문경영인이 승계하는 경우가 많아져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되므로 50%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기부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같이 20% 정도로 완화하더라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7. 초과 출연된 주식에 대한 배당 강제

공익법인 출연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율이 1.1%라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배당수익율이 낮은 주식을 출연한다는 것은 결국 공익법인에 대한 재원조달의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초과 출연된 주식에 대한 배당을 강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주식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처분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식으로 부터의 수익에 대한 의무지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배당을 강제하고, 의무지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추징을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의무지출의 범위는 '그 해의 영업이익율과 배당성향을 고려한 상당액'의 5% 이상 등과 같이 정할 수 있다.

---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로는 감사 선임시 3% 초과 지분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하 생략). 즉 상법상으

<<참고문헌>>

박훈.채현석, 상속.증여세 실무 해설, 삼일회계법인.삼일인포마인, 2014.
이상신.박훈,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 시리즈 1), 아름다운 북, 2009.2.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3.
김을순.노직수,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제11권, 대한교육경영학회, 2002.
김종근.전병욱,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관련 증여세 과세문제”(구원장학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012.9, 제29권 제3호.
김진수,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재정포럼 14권 8호, 한국조세연구원, 2009.
손원익, "비영리법인 관련세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12.
옥무석·이기욱, “학교법인의 과세문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4회 하계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 2008.7.
이승희, “재벌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주식 보유현황 및 지배구조”, 경제개혁리포트, 경제개혁연구소, 2010-8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相續稅法改正法律案(政府) 檢討報告", 1996.11.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news/4167954)
파이낸셜뉴스(http://www.fnnews.com/news/201108191159515998)
동아일보, “SK㈜ '적대적 M&A' 무산 이후 파장과 외국사례”(2003.4.14자).
비즈니스워치, “최태원 SK 회장 기부주식, 한 주 만에 현금된 사연”(2014.8.21자).
조선일보 “[사설] 이건희 회장 일가의 8000억원 헌납을 보며” (2006.2.7자).
조선일보, “공익재단 기부 막는 '후진세법'”(2009.1.1자).
조세일보, “2015년, 가업승계 날개를 달다”(2014. 11. 18.자).

日本 総務省,『平成２０年度 公益法人に関する年次報告』, 2008.
www.kagoshima.med.or.jp/hojin/guideline.pdf.

토 론

한국 민간공익재단의 발전방향

변영선
공인회계사

최근 재산의 사회환원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민간공익재단의 발전방향 연구 발표회'가 아름다운재단에 의해 개최되고 또 동 발표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간공익재단의 발전방향 연구를 통하여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제한 제도에 대해 분석해 주시고 심도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신 박태규, 이상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삼일회계법인 근무 당시 주식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입장에서 설립자문 역할을 여러 번 했었고 최근에는 공익재단법인에 소속하여 주식을 출연받아야 하는 재단 실무자로서 역할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 제시한 기부자의 입장과 재단의 입장을 모두 경험한 후의 짧은 생각을 토론자로서 더하고자 합니다.

1. 투명성 확보와 출연재산의 적정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 그러나…
2008년 상증법의 개정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와 출연재산의 적정 운영을 위한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총 20여개에 이르는 복잡한 세법상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공익법인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교육훈련이나 과세당국의 사후점검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제도의 취지대로 제대로 정착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된 이후에는 주식출연에 따른 문제점은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식출연에 대한 기부자와 공익법인의 입장은?

주식을 기부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주식출연비율 제한은 기부를 제한하는 절대적 역할을 합니다. 많은 주식 기부자들은 공익법인 설립시 1차적으로 5%를 출연하고 성실공익법인이 된 후 5%를 추가 출연하고 이를 초과하는 주식은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기부를 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성실공익법인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한 번 더 발생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배당수익이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주식의 출연을 제한할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다면 동 주식이 무수익자산 즉 배당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자산으로 남고 매각도 자유롭지 못한 경우일 것입니다. 31개 기업진단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수익율이 1.1%에 불과하다는 선행 연구는 공익법인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연주식에 대해 일정 배당을 강제하는 개선방안은 상당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양화된 공익활동을 위한 주식취득 제한의 문제점

상기 논의 주제와는 다소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최근 공익법인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지원을 활발히 진행해가면서 공익법인의 5% 주식취득 제한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익재단의 활동영역이 수혜자에게 한시적인 시혜적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또는 취약계층이 직접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운영 지원해주는 영역으로 확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공익법인이 사회적기업의 주식을 5%(10%)이상 취득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 시리즈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는 2009년부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 기획연구3] 계획기부도입을 위한 연구

연구자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훈(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첫 번째 기획연구로서, 건강한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세법제도 확립과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개선 연구'를 통하여 기부 관련 세법제도개정안(이월공제기간5년으로 연장_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이 통과되는 첫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2009기획연구1]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연구

연구자 강철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이민영(한국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부문화의 성장과 함께 고액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액기부에 대한 연구와 정보에 대한 요청이 높아졌습니다. 부유층의 고액기부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을 기부선진국의 수준으로 성장시키려는 목적으로 두 번째 기획연구가 기획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부에 대한 인식과 기부형태를 분석하여 향후 건강한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건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2009기획연구2] 부유층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연구

연구자 강철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오준석(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훈(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2009 기획연구2를 통해 확인된 부유층 기부활성화가 실현되기 위해 계획기부(Planned Giving)의 개념과 실행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를 기획하였습니다. 전 생애의 라이프사이클과 자산운용, 유산상속을 함께 고려하며 계획적으로 기부를 실행하는 계획기부는 유산기부와 고액자산기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매우 다양한 전략과 방법들이 포함되는 계획기부를 개념, 법률, 금융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추후 한국사회에 다양한 기부상품과 제도적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기본을 제시하였습니다.

[2011 기획연구4]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계획기부 연구

연구자 오준석(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2010 기획연구3에 이은 후속연구로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맥락에서 계획기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계획기부의 방식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미국의 실제 계획기부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법적 환경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여 향후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환경과 인프라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2012 기획연구5]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

연구자 이상민(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국내 최초로 민간공익재단의 현황과 역할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재단정보를 취합하여 통계적 자료 분석을 통해 공익재단의 사업분야, 설립주체, 설립연도, 등록부서, 자산의 규모 등을 분석하고, 민간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이들 법과 제도가 지난 40여년의 기간 동안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향후 한국의 민간 공익재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된 연구입니다.

[2013 기획연구6]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획연구

연구자 박훈(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신(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송헌재(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노연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실공익법인 지정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연구’, ‘국내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세법적 규제의 변화 및 기본방향’, ‘기존 나눔통계를 활용한 국내 나눔총량 추계’, ‘국내기부,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 동향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 기부문화 현황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도입 방안 등을 분석하고자 진행된 연구입니다.

[2014 기획연구7] 2014년 기획연구 보고서

연구자 이형진(아르케 대표, 성공회대 외래교수), 한동우(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강철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노연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민영(고려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민화(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BK21+연구원),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송헌재(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필란트로피(Philanthropy)란 무엇인가?', '한국인의 상호부조 행동 분석', '비영리 조직의 모금활동의 성공과 실패요인 분석-모금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모금 실부자의 윤리적 딜레마', '법인과 신탁, 그리고 기부자조언기금-고액기부자들의 기부 선택을 위한 주요 3가지 제도 비교 연구', '가구 유형별 기부행태 및 가구 내 기부 결정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비영리 단체 등 모금현장에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며 진행된 연구입니다.

본 기획연구의 발표자료는 기부문화연구소 블로그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bfarch.tistory.com) 블로그에서는 기부문화연구소의 기획연구와 그 외 다양한 기부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한국 최초의 유일한 기부문화전문연구소로서 한국사회에 기부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기부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정확한 통계자료, 기부 선진국의 풍부한 사례들을 제공하는 나눔의 지식창고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연구 및 조사, 교육, 출판, 정보 교류를 통하여 기부문화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 기부문화조사 및 심포지엄

격년으로 개인/기업의 기부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기부관련 심층 주제에 대해 국내외 최신기부동향 및 심층분석 내용을 토론하는 기부문화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한국인의 기부지수조사 : 한국인의 기부지수조사 '기빙인덱스'는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활동과 관련된 정책방안을 제시합니다.(짝수년도 격년진행)
- 기업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기업문화에 적합한 한국형 지표를 개발하여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합니다.(홀수년도 격년진행)
- 기부문화심포지엄 : 국내외 최신 트렌드 및 한국 기부문화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개념과 주제를 소개하는 심포지엄.

◉ 기획연구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부유층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기부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기획연구하여 올바른 정책생산의 방향제시 및 각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4년 기획연구 보고서

발행일 2014년 11월 일
발행처 아름다운북
발행인 예종석
지은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 및 편집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주소 110-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전화 02)766-1004
전송 02)3675-1230
웹사이트 www.beautifulfund.org
인쇄 해든디앤피 02)2266-6372